

서울특별시 강서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1월 23일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1월 7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1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1.23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재무과장 윤성신)

□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【 공유재산 취득 2건 】

- 화곡6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..... 비예산
 - 위 치: 화곡동 980-19
 - 취득내역: (기부채납) 토지 1필지 1,150㎡, 건물 1동 3,623,945㎡

- 화곡본동 시장 고객주차장 건립..... 36억 5,500만원
 - 위 치: 화곡동 98-32 외 2필지
 - 취득내역: (매입) 토지 330㎡, 건물 147.1㎡
(신축) 연면적 330㎡(자주식 10면)

3. 참고사항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 제10조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- 「화곡6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」의 건은
 - 현재 화곡6동 주민센터의 건축 연도(1984년 1월)가 오래되어 노후되고 엘리베이터 부재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 열악한 상황으로, 서울 강서지구 신혼희망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에 따라 신축한 공공청사를 건설사에서(<주>금호건설) 기부

채납 함에 따라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건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,

- 위치는 강서구 화곡동 980-19 이며
- 사업규모는 토지 1,150㎡, 건물 1동 3,623.945㎡ 임
-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
-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가격은 토지 52억 4,800만원, 건물 68억 400만원으로 총 120억 5,200만원임.

○ 「화곡본동 시장 고객주차장 건립」의 건은

- 화곡본동 시장 내 고객 주차시설이 없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고객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
- 위치는 화곡동 98-32 외 2필지 이며
- 사업규모는
 - 가. 토 지: 330㎡(사유지, 도시지역, 제2종 일반주거지역)
 - 나. 주차장: 330㎡(자주식 주차장 10면, 주차관제시스템, CCTV 설치)
-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임
- 소요예산은 균특¹⁾ 21억 9,300만원, 시비 8억 7,700만원, 구비 5억 8,500만원으로 총 36억 5,500만원임.

1)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
-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

5. 종합의견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

- 「화곡6동 주민센터 신축 기부채납」은
 - 현재 화곡6동 주민센터는 건축 연도(1984년 1월)가 오래되어 노후되고 엘리베이터 부재 등 주민들의 이용불편 및 개보수 비용 증가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강서 신혼희망타운 건립에 따른 동 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신축하는 것으로
 - 새로운 청사에 문화·체육·복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 하는 등 주민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- 「화곡본동 시장 고객주차장 건립」은
 - 2022년 7월 ‘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’ 으로 선정되어 2022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승인을 거친 후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음
 - 화곡본동 시장 내 고객주차시설이 없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화곡본동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

-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자주식 주차장이 확보되면 시장 방문고객 증가와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7. 토론요지: 생략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를 말한다)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에 따른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 - 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 -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취득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.